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5-91호

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43호(2005.03.17.)로 신정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.)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06호(2017.08.17.)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59호(2022.02.17.)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37호(2024.07.04.)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4-71호(2024.07.2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5년 9월 25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 :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

나. 면 적 : 82,071.7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신동일)
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35, 3층(신정동, 신성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5년 9월 23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명칭	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지상/지하)	높이 (m)	용 도	비고
택지	64,712.10	16,751.7118	25.89	272,455.4221	249.82	23/5	69.04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대상	공동주택 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					근린생활시설(㎡)	
	소계	49㎡	59㎡	59㎡	78㎡	84㎡	102㎡	113㎡	124㎡	대지	건축 연면적
계	1,713	224	647	36	239	520	40	3	4	1,054.8568	6,439.0446
토지등 소유자	1,143	4	449	26	186	436	35	3	4		
보류시설	10	2	4	1	1	2					
일반분양	498	200	160	7	44	82	5				
임 대	62	18	34	2	8						

다.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설(㎡)			용도폐지(㎡)	
구분	종류	규모	종류	규모
정비기반시설	도로	10,802.30	도로	7,608.80
	공원	5,205.10	공원	1,009.10
기반시설	공공청사	399.10		
	사회복지시설	953.10		

※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향후 협의 및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

- 이주예상시기 : 2026년 2월 이주개시
- 철거예상시기 : 거주자 이주 완료시

6. 관계서류 : 생략 (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비치서류와 같음)